

의 정 정 보

2008 - 7 7. 10.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8
3. 최근 타 시·도 제정조례	34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3
<부록1> : 행복한 책읽기	56
<부록2> : 구입도서목록(2008-2차)	58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① 지방의회의원의 무료경로식당 설립 및 운영

《질 의》

본인은 현재 안산시의 시의원입니다.

지역구내의 사회복지여건이 열악하여 국가와 도시에서 권장하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운영주체 : 비영리법인단체

○ 운영방법 : 후원금, 시·도비 지원금, 본인 출연금

상기와 같이 60세 이상 식사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코자 하오니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5. 13. 김동규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선거구안에서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정당의 쇠고기수입반대 홍보리본 배부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쇠고기수입반대 홍보리본 배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쇠고기수입반대의 표시로 촛불문화제 및 기타행사에서 홍보리본(창조한국당 당명 미표기, 문구 미표기)을 당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대상범위, 대상지역의 범위는? (2008. 6. 4. 창조한국당 대표자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배부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 (2008. 6.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정당의 대표최고위원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위한 질문수집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초청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코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토론회 개최시에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포털과 언론사중 몇군데를 지정하여 사전에 접수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토론회 개최일자 : 2008. 6. 24 ~ 7. 3 기간중 개최예정

○ 질문수집방법 : 포털 및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수집
(2008. 5. 27. 한나라당 사무총장 권영세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8. 6.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국회의원배 족구대회 개최

《질 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회의원배 족구대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1. 지역 족구연합회에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배 족구대회를 신설·개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지역 족구연합회의 국회의원배 족구대회 신설·개최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국회의원배 지역 족구연합회 주최의 국회의원배 족구대회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6. 11. 국회의원 문학진 질의)

《답 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국회의원배 족구대회를 신설·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대회명칭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성명을 표기하거나 동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8. 6.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⑤ 국회의원의 선거구민 대상 영어 강의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관련해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청이 설립한 노원정보도서관이 최근 구민을 위한 영어 강좌 프로그램인 ‘노원 잉글리시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노원구청(노원정보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이 정기적 혹은 1~2회성 행사로나마 영어로 강의를 해줄 것을 현재 구두로 요청해 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선거법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해 준다면 공식 문서로 요청을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강의 대상은 성인, 학생, 직장인으로 나뉘져 있는 상태입니다.

1. 국회의원이 여기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강의를 가능하다면 주 1회 혹은 월 2회 등 정기적으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3. 부정기적으로 한번씩 일정이 허락할 때마다 1회성 강의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강의를 한다면 강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강좌를 수강하는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강의료를 받지 않는 형식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Nowon English Cafe 프로그램 개요》

☐ 회원모집

- 모집방법 : 인터넷 접수 후 전산추첨 - 면접
- 모집인원 : 각 그룹별 8~10명
- 신청자격 : 노원구 주민 및 관내 직장인/대학생, 관내 거주 외국인

☐ Group-Leader / Advisor 모집

- 자격 : 우수한 외국어 실력을 가진 내외국인 / 원어민 및 귀화자
- 역할 : 그룹 관리, 교재선정, Talk 진행 등 / 그룹당 30분씩 표현 등 교정
- 주 2회(회당 2시간) 2개월 활동

□ 내 용

- 회원제 운영 : 1회 2개월(3회 이용 가능) 주 2회(회당 2시간)
- 회비 : 10,000원/월(2개월분 선납)
- 운영방법 : 그룹별 자유타lk 및 원어민의 Advise

□ Group-Leader 및 Advisor 인센티브 제공

- 소정의 활동비(실비)지급
- 구청주관 행사시 우선권 부여 등 (2008. 6. 10. 국회의원 홍정욱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지 아니한 시기에 관내 도서관이 개설한 유료의 영어강좌에 통상의 강의료를 받고 출강하여 한정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없이 강의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수강대상을 현저하게 확대하거나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08. 6.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사)한국장애인정치포럼의 행사 개최시 음식물 제공

《질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행사개요

○ 공동개최 : 국회의원 이정선(비례대표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치포럼 이사장으로서 동 법인을 대표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치포럼

※ 행사개최비용은 한국장애인정치포럼에서 전부 부담함.

○ 행사성격 :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행사

○ 참석인원 : 국회의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장애인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 및 광역 장애인 단체장·지방의원 등 장애인 400여명

※ (사)한국장애인정치포럼 소개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과 정치적, 사회적 참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임. 임원으로 이사장 등이 있음.

□ 질의내용

국회의원인 본인이 부담·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최측인 (사)한국 장애인정치포럼에서 부담·지출해 참석자들에게 간단한 음식물로써 김밥, 떡, 과자 등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 (2008. 6. 12. 국회의원 이정선 질의)

《답 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인 대표자로 있는 귀문의 단체가 그 국회의원과의 공동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단체의 경비로 참석자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당해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6.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비례대표의원직 배분합의에 따른 탈당 및 의석승계

《질 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직의 비례대표의원직과 관련 같은 당 소속의 비례대표 순위자간에 의원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행하기로 합의 공증하고 당시 비례대표 등록시 소요되는 비용을 1/2 균등하게 배분 납부한바 이는 선거법상의 사전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2. 담합행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지위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또 위 당사자가 약속이행을 하기 위해 2006년 당사자간 정한 시한의 탈당계와 의원직사퇴서 등을 행사하기 위한 당사자로 지역 당원협의회장을 지정 위 사안을 내용으로 위임장에 약속기한을 명시 공증을 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지?

4. 위 문3의 위임장을 근거로 위임받은 자가 정당에 접수할 경우 정당법 제25조에 명시된 탈당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5. 위 당사자 중 전반기 의원직 수행자가 약속을 반복해 탈당계 접수후 10여일 이후에 본인은 탈당의사가 없다는 서한을 당에 접수했을때 정당법의 탈당 성립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08. 5. 28. 충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강부 질의)

《답 변》

1.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 문 4·5에 대하여

정당의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을 포함하며 이하 ‘정당’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귀문의 경우 탈당신고서 제출당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정당은 그 탈당신고서를 유효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8.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9092호, 2008.06.05. 공포 】

1. 제정이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가 심하고, 최근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수력발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등과 같이 용도별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정부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조정역할 기능과 표준화된 안전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저수지 등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저수지·댐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전국의 저수지·댐에 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며, 저수지·댐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수지·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안 제4조 및 제5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각각 둠.

나. 안전점검(안 제7조 및 제8조)

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지정·관리(안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하

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안 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093호, 2008.06.05. 공포】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안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방화구획의 훼손 금지 등(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다. 허위시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안 제13조제2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방염처리업자가

허위시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유도(안 제25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4호, 2008.06.05. 공포]

1. 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8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산업의 활성화(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공개하여 소방사업자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하여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

라. 국제협력(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소방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2008.06.05. 공포]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턴취업의 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등을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함.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및 제5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라. 인턴취업지원(안 제11조)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3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117호, 2008.06.13.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축산물의 생산·수입에서부터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축산물 및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도록 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과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원산지표시제도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축산물 및 쌀·김치류에도 원산지 등 표시를 하도록 함.

나. 원산지 허위표시의 금지 등(안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제35조 및 제38조)

축산물 및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영업소폐쇄 등의 요청(안 제18조의3 신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의 폐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쌀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6]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9121호, 2008.06.13. 공포]

1. 제정이유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위해식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짐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생산·판매의 금지 등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1) 식품안전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3) 체계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식품안전수준의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 및 제8조)

- (1) 다수의 부처가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이 각 부처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관계 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1)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3)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 평가 의무화(안 제20조)

- (1) 과학적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에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그 밖에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3)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안 제24조)

- (1) 식품 등의 안전에 대한 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간에 정보의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3)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바.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참여 강화(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1)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보호 우선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함.
- (2)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3)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보호 우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부분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122호, 2008.06.13. 공포]

1.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

하여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안 제9조제3항)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장으로 하여금 아동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안 제9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안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등의 의무를 부과함.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안 제24조 및 제25조)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02호, 2008. 06. 05. 공포]

1. 개정이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 지정제도를 없애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범위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업인 편의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지 지정제도의 폐지(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 (1)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상 농지확보가 어려움.
- (2) 농지전용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체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 지정 부담을 완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도지사의 자율적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확대(안 제28조제3항제2호)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행정지연 및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면적 제한 완화(안 제29조제2항제1호)

- (1)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에 제한이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규모화가 곤란함.
- (2)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 (3) 이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 농촌활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한 확대(안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마.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안 별표 2 제61호란 신설)

- (1) 농촌지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와 같은 개발이 이루어져도 농업인은 농지매각 대금 외에 개발이익을 얻기 어려움.
- (2)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에 농지를 출자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함.
- (3) 이와 같이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05호, 2008. 06. 05. 공포]

1. 개정이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종별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안 별표 2)

- (1)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수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같으나 겸업의 경우보다 등록기준이 높으며, 다른 업종과 달리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다른 건설업종을 영위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같게 완화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다른 업종의 영위기간을 삭제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한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안 별표 2 및 부칙 제2조)

- (1)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2)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14호, 2008. 06.11. 공포]

1. 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 구체화(안 제5조 신설)

- (1)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공단의 확인 및 경감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 (3) 이와 같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구체화(안 제28조 신설)

- (1)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은 국가가, 그 외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06.13. 공포]

1.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 감경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명시(안 제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성질상 행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일반 규정이므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및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직업군에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의 구체화(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할 경우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당사자의 의견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함.

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등(안 제5조 및 제7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범위를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기준 구체화(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과태료 체납의 하한을 법률에서의 하한인 체납 횟수 3회, 체납액 500만원으로 하되 중대한 재해, 중한 질병, 경제적 손실 등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하고,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시기와 서식을 정하며,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는 과태료 체납의 하한을 체납 횟수 3회, 체납액 1천만원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52호, 2008. 06. 20. 공포]

1. 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83호, 2007.12.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위원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축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으로 정함(안 제5조).
- 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건축디자인의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다.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단체의 설립 및 건축물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8조제2항).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등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3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06. 20. 공포]

1.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안 제2조)

-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 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버섯·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안 제3조)

-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안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안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안 제9조·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55호, 2008. 06. 20. 공포]

1.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고,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75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배제 및 특례의 설정,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과 지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안 제2조)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고, 농어촌다운 마을 경관과 전통문화자원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 배제 및 특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위하여 숙박시설, 체육시설 및 영업시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 배제 및 특례부여는 다음과 같음.
 - (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와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체험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
 - (나)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실내승마장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을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 (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기본적인 음식 보관·조리시설과 급수시설·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영업시설기준은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농어촌 실정 및 영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서 체험·휴양사업에 부수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안 제12조)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농교류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실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호, 2008. 06.20. 공포]

1. 개정이유

도시림 등의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하며, 산림사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산림기술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753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838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조림지를 훼손한 자에 대한 조림기간 설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사업 실행신고의 수량 등 변경 대상 상향조정, 입목벌채 허가서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림지를 훼손한 자에 대한 조림기간 설정(안 제6조제1항)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림지를 훼손한 자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훼손지에 조림을 하도록 함.
- (3) 조림지를 훼손한 자에 대한 조림기간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질서 확립이 기대됨.

나.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과 입목벌채 간 신고·허가수량과 실제수량과의 비율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안 제10조제4항)

- (1)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입목벌채의 신고수량과 실제수량이 2할 이상 차이가 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인에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목벌채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수량과 실제수량이 3할 이상 차이가 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변경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자의 비율을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벌채신고수량과 실제수량이 3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벌채신고수량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알리게 함.
- (3) 이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촉진 및 규제완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대가 기대됨.

다. 입목벌채 허가 서류 완화(안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 (1) 위성항법장치(GPS)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벌채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벌채허가 등 구비서류 제출 시 벌채구역도 등 대신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입목의 벌채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 시 벌채구역도, 시업구역도 및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 시업면적, 및 굴취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함.
- (3) 이에 따라 허가신청자가 벌채허가 구비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대가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호, 2008. 06. 26. 공포]

1.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고,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민간 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75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20855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절차,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지도사·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절차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마을협의회 규약,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 시설 운영 등의 사업계획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도록 함.

나.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및 인증기준(안 제9조, 제10조 및 별표 2)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신청절차, 인증기준과 인증서 발급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하려는 자와 농어촌체험지도사·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내주도록 함.
- (3)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가)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 도농교류 관련법령, 마을경영 등의 교육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총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 농어촌지역 시스템의 이해,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등의 교육과목을 갖추어야 함.
 - (나)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은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 주제별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농어촌체험교육 교재개발 등의 교육과목을 갖추어야 함.

(다)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은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 농어촌마을의 이해, 마을해설기법 등의 교육과목을 갖추어야 함.

다.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절차 마련(안 제17조)

- (1)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7호, 2008. 06.11. 공포]

1. 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14호, 2008. 6.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신청절차(안 제13조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함.
- (3) 장기요양급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쉽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의 구체화(안 제14조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함.
- (3) 비급여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예측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의 구체화(안 제22조 신설)

- (1) 법률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하므로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 방법의 구체화(안 제30조 및 제31조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단이 청구받은 급여비용을 심사·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청구받은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을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급함.
- (3)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39
----------	-----

발의년월일 : 2008년 5월 20일

발 의 자 : 김인식의원 외 18인

1. 주 문

- 중앙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정의 의료비 및 요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나.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을 불과 40여일을 앞에 둔 현시점에서 요양보험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 장관 등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전달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3.1%인 16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 사이 노인의료비는 1995년 7,281억원(전체 의료비의 12.2%)이었으나 매년 30%에 가까운 증가추이를 보여 2005년에는 7조 3,159억원(26.0%)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정의 의료비 및 요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을 불과 40여일을 앞 둔 현시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요양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약 4만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에 촉박한 일정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교육기관을 무분별하게 난립시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요양보호사 과잉공급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높은 이직율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 비정규 시급요양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어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그로인해 잦은 이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 첫째, 중앙정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제로 야기된 교육기관의 부분별한 난립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둘째, 중앙정부는 요양보호사 실습제도의 비현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 전반을 장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 셋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더 나아가 무자격강사로 인한 부실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수강료 표준화 적정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촉구합니다.
- 넷째, 중앙정부는 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8. 5. 2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총리실장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6. 국회의장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8. 한나라당 대표
9. 통합민주당 대표
10. 자유선진당 대표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jeon.kr>]

②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의 번	안 호	478
--------	--------	-----

발의연월일 : 2008년 5월 일

발 의 자 : 박영철 의원 등 43명

1. 제정이유

- 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소방체험관을 최근에 발생한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체험센터를 설치하여
- 나. 재난방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여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은 주민의 재난에 대해 학습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체험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센터의 육성발전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다. 센터의 휴관일, 이용시간, 준수사항 및 지시 사항, 손해배상, 출입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 라.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경기도조례 제 호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화재 및 재난에 대해 학습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재난방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여 재난에 강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시한다.

1. 화재 및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안전교육
2. 재난 및 방재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전시 및 제공
3. 재난 및 방재에 관한 지식의 계발 및 보급
4. 방재에 관한 상담
5. 전시실, 방재 도서실, 연수실 및 부속설비의 이용
6. 그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제3조(육성) 도지사는 도민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를 육성발전 시켜야 한다.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의 다음날(그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휴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2. 월요일
3. 센터의 정기점검 및 개관준비 기간

②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지사는 특정한 사정에 의해 휴관일에 개관하거나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및 지시) ① 도지사는 센터의 이용자에게 준수사항을 정하고, 센터의 관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의 준수사항은 주민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센터의 이용자는 자기의 책임사유에 의하여 이용 중에 센터시설, 설비 혹은 전시물을 손상하거나 센터의 물품을 분실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출입금지 등) 도지사는 센터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센터로부터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외에 센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소방기본법

-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자료출처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지역 경제 살리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 행안부, 제13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월 12일(목)과 13일(금) 이틀간 경기도와 공동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경제통상 국·과장,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부산시의 『New Start 5140! 일주 동래건설』, 강원도의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15개 시·도의 특색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이 발표됐다.
- 15개 시·도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한 심사결과, 최우수상(대통령상)은 전라북도의 『글로벌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는 전북』, 우수상(국무총리상)은 강원도의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가, 장려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의 사례가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보는 “물가상승과 고용 불안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살리기가 필요한 시점에 전국 지역경제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나름대로 역할을 도출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정 차관보는 또 “정부차원의 전략과 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99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3회를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시켜 지역경제 활력화의 전기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 올해 말까지 모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

－ 행정안전부, 8개 시·도 사업계획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단체, KT와 공동으로 2008년도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확대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총 160억원(정부 40억, 지자체 40억, KT 80억)의 예산을 확정했다.
- 이번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농어촌 지역의 99.8%인 386만 2천여 가구에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된다.
- 정부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농어촌 지역 387만 가구 중 50가구 이상 마을 371만 가구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50가구 미만 마을 13만 2천 가구에 초고속망 환경을 구축해, 총 384만 2천 가구에 초고속망을 구축했다.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50가구 미만 지역의 8개 시·도 1,502개 마을 19,505가구에 초고속망 구축을 유선 및 위성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을 희망하는 모든 농어촌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소규모 농어촌 지역은 경제성이 없어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초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 사업으로 해묵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소외계층에게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지역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물량

구 분	유선물량		위성물량		계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계	1,336	19,158	166	346	1,502	19,505
울 산	10	124	1	6	11	130
경 기	131	1,471	2	16	133	1,487
강 원	118	998	18	34	136	1,032
충 남	189	1,425	7	23	196	1,448
경 북	226	4,363	51	67	277	4,430
경 남	382	5,989	7	13	389	6,002
전 북	26	238	22	34	48	273
전 남	254	4,550	58	153	312	4,703

③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추진

－ 건물별 광고물 면적 총량만 제한해 창의적 옥외 광고물 디자인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하고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행안부는 「업소별」·「광고물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위치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신도시 조성지 등에 도입하여 창의적인 옥외광고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제한되는 건물기준 면적이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표시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전광판 광고 시 공익광고의 시간당 광고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여 전광판 광고사업의 영업상 자율성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도시미관 혹은 시설보호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기준이 강화되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특정구역 지정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형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행안부는 이외에도 민원구비서류 감축, 각종 행정내부규제 완화 등에 대한 규제개혁도 추진 중이다.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기업협력지원관'을 신설(3월)하고,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코너' (www.mopas.go.kr)를 신설하여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받는 등,

○ 지속적으로 기업·자치단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왔고, 앞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최두영 정책기획관은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로 민원구비서류 감축 추진

○ 그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각종 민원 처리시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왔으나, 공동이용대상 정보와 기관을 대폭 확대해서 구비서류를 더욱 감축할 계획이다.

○ 즉, 공동이용대상 정보를 현 42종에서 수출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24종을 추가하고, 대상기관도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의 43개에서 50개 기관으로, 금융기관은 현재의 2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각종 행정 내부규제 및 부담 완화

○ 행정기관 사이의 규제는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이 부분의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각 부처 인사운영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개선하고, 장관에게 3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위임하며, 각종 인사 관련 협의·승인제도를 폐지한다.

○ 자치단체 조직, 인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시군구 조직·인사운영 협의권을 시도에 위임하고, 중앙 투·융자심사대상 축소, 지방세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각종 자치단체 평가의 통합실시 등을 추진한다.

4 「2008 휴양하기 좋은 섬 Best 30」 선정

－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동－

- 도서종합개발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와 문화관광 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오지철 사장)는 공동으로 「2008 휴양하기 좋은 섬 Best 30(이하 "휴양 섬 Best 30")」을 선정하였다.
- 최근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육지관광에서 해양체험으로 여가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천혜의 관광자원인 우리나라 3000여 개의 섬들 가운데 약 1%에 해당하는 30개의 섬을 엄선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다양하고 전략적인 홍보로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휴양 섬 Best 30」 선정이 계획되었다.
- 「휴양 섬 Best 30」은 휴양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문화유적, 빼어난 경관 등의 볼거리와 독특한 별미나 향토음식, 조개잡이, 갯벌체험, 하이킹 등의 체험거리 같은 관광 매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접근성, 숙박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 21개 시·군에서 69개의 섬들 가운데 「휴양 섬 Best 30」에 선정된 곳은 아래와 같다.
 - 인천(4) : 석모도, 대이작도, 덕적도, 대청도
 - 충남(4) : 대난지도, 삼시도, 원산도, 외연도
 - 전북(1) : 선유도
 - 전남(15) : 보길도, 청산도, 관매도, 거문도, 임자도, 외달도, 상하조도, 흑산도, 소안도, 우이도, 가거도, 증도, 비금도, 홍도, 사도
 - 경북(1) : 울릉도
 - 경남(3) : 지심도, 사랑도, 소매물도
 - 제주(2) : 추자도, 우도

- 그밖에도 섬 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양 섬 Best 30」에 선정된 도서를 여행한 뒤 여행후기나 동영상 공모전에 당선된 여행객들에게는 관할 자치단체의 특산품을 부상으로 증정하는 이벤트(event)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응모자격 : best 30 선정 도서를 여행한 사람 누구나
- 응모기간 : '08. 7. 10 ~ 10. 31
- 응모내용 : 섬 여행후기, 또는 섬 여행 동영상
- 제출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선정 수 : 500명
- 특산품 : 여행한 도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 특산품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참조

-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향후 여행전문가 등의 팸투어(fam tour) 등을 통해 선정도서의 휴양의 질(Quality)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의 홍보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2009년에도 또 다른 테마로 우리나라의 우수도서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휴양 섬 Best 30」가운데에서 편의상 아래의 15개 섬을 대상으로 답사기행, 바다체험, 탐승(探勝), 트레킹, 하이킹 등의 5개 테마로 분류하여 작성한 상세 보도자료와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기사 작성 시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사기행 : 완도 보길도, 완도 처산도, 여수 사도
- 바다체험 : 완도 소안도, 신안 가거도, 보령 삼시도
- 탐승(探勝) : 신안 홍도, 통영 소매물도, 옹진 대청도
- 트레킹 : 울릉도, 통영 사랑도, 신안 우이도
- 하이킹 : 신안 증도, 군산 선유도, 제주 우도

5 휴양·치료목적 신개념 온천 도입

－ 행안부, 보양온천 지정·관리규칙 입법예고 －

- 온천욕장, 찜질방, 노천탕 등 일반적인 온천시설 외에 의료시설과 요양시설, 공원과 산책로까지 딸린 온천이 연내 도입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온천과 달리 체류하면서 휴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보양온천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6월 20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
-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하여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으로 일본은 1954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국내에 도입되는 보양온천은 행정안전부가 2007년부터 의료계, 학계, 관광·온천전문가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수렴과 일본·유럽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했으며,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성분과 내부시설 및 친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먼저 온천수 기준은 온도가 최소 35℃ 이상이 되거나 35℃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희소하면서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탄산이나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내부시설은 온천수를 통한 심신회복 및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수중 운동프로그램 시설, 찜질방과 노천탕 등을 갖추어야 하며, 대규모 보양온천 지구의 경우에는 의료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 수영장 및 공원 등이 부대시설로서 완비되어야 한다.

○ 이 밖에도 보양온천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야외 및 실내공기 질이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보양온천은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일반온천과 차별화된 보양온천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용증진을 위해 세제완화, 관광기금 활용, 공공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 행안부는 보양온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양온천 내부 시설과 연계한 피부·재활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온천의학회 설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천 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양온천표시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비 고

1. 보양온천표시 : 파란색 (Cyan 100%)

2. 글 씨 : 흰색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 보양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음

※ 보양온천시설 및 지구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음

6] 청소년 안보의식 ‘혼란’스럽다

- 행정안전부, 청소년 대상 「안보·안전의식 실태조사」 실시 -
- 청소년 절반 이상이 6.25전쟁 발발연도, 북한의 남침 사실 몰라 -
- 미국,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위협나라인 반면 협력해야할 나라 -
- 국가 자긍심 및 전쟁 등 위기사 위기 극복 참여의지 매우 높아 -
- 각종 안보·안전 위협에 대한 체감도는 높으나 대처요령 인지도는 부족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13(금)부터 6.16(월)까지 4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안보·안전의식 실태조사를 위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시 재난·안전·비상대비업무의 총괄 조정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안보·안전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전국 **청소년 (중1~고3)**
- ❖ 표본크기 : **1,016명**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3.07%point**
- ❖ 조사일시 : 2008. 6. 13(금)~16(월)
- ❖ 표본추출 : 성별/학교급별/거주지별 비례할당추출(Quota Sampling)
- ❖ 조사방법 :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 ❖ 조사기관 : (주)리서치 앤 리서치 (대표 : 노규형)

□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과반수 이상이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6.25가 발발한 연도를 1950년이라고 정확히 응답한 청소년은 10명중 4명 꼴인 43.2%였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도 48.7%에 그쳤다.

- 또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55.8%가 위협을 느끼고 있으나 북한이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64.2%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 남북한 및 주변 강대국과 관련한 안보 현실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28.4%), '일본'(27.7%), '북한'(24.5%)순으로 '미국'을 가장 위협국가로 꼽았으며, 이와 반대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가장 손잡고 협력해야할 나라로도 '미국'(34.6%)이라고 응답하였다.
- 또한 협력이 필요한 나라로 '미국' 다음으로 '일본'(14.8%)보다 '북한'(22.3%)과 '중국'(17.7%)을 꼽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응답 비율은 49.4%에 그치고 있다. (vs 북한, 중국, 러시아 46.6%)

□ 청소년들이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안보 개념의 혼란이 있는 반면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위기 극복 참여의지'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80.7%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19.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전쟁, 대규모 테러 및 재해재난 등 국가 위기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85.4%, 보다 구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앞장서 나가 싸우겠다'는 60.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 아울러 남학생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5.0%로 '그렇지 않다'는 11.6%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청소년들은 안보·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위협체감도는 높으나 이에 대한 안전한 행동요령 인지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AI 등 신종전염병에 대해 63.3%,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테러에 대해 66.0%, 중국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76.4%가 '위험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 지난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전국 학교에서 실시한 소방, 지진대비 훈련의 결과 '소화기 사용요령'은 82.9%, '지진 대피 요령'은 74.4%의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 시설 사고시 행동요령'(59.2%), '전염병 발생시 행동요령'(57.9%), '방독면 착용요령'(18.4%)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번 조사결과 행정안전부는 청소년들의 안보·안전의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선 금년도 을지연습시 청소년들의 참관을 적극 유도하고 인터넷에서 '안보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81.5%가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특별 및 재량활동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안보 안전교육 책자와 영상물을 배포하고 안전 체험식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7 내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땐 1336으로 신고하세요

- 7월 1일부터 공공·민간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일원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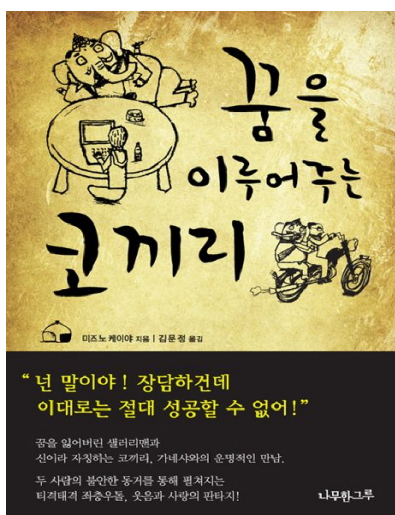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공공·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합하여 단일접수전화 '1336'을 운영할 예정이다.

- 그동안 공공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 이원화되어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헛갈리고 이용하기 불편하였으나,

- 앞으로는 공공·민간부문 구분 없이 단일접수전화 '1336'으로 민원인이 신고접수 및 상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 1336)를 통해 바로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등이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되며, 민간부문에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구제·해결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합·운영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절차가 쉬워지고 피해자 구제도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안내, 상담·신고처리의 유형분석, 침해신고처리 사례집의 발간·배포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꿈을 이루어주는 코끼리

저자명 : 미즈노 케이야

출판사 : 나무한그루

출판년 : 2008년

페이지 : 359

가 격 : 12,000원

장편 판타지 소설 형식의 자기 계발서. 무미건조한 일상을 반복하며 막연하게 성공을 꿈꾸던 30대 셀러리맨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신을 자칭하는 코끼리 형상을 한 가네샤가 나타난다. 매일 빈둥거리며 먹고 자고 게임하기만을 반복하던 희한한 신 가네샤는 주인공인 셀러리맨에게 지금부터 자신이 내는 간단한 과제만 실천해가면 확실하게 성공할 거라고 큰소리친다.

2007년 8월 29일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 아마존재팬을 비롯한 전국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8개월째 상위 10위권의 자리를 지키면서 판매량 또한 80만부를 돌파했다. 가네샤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행동 하나하나와 마음가짐을 예리하게 지적해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성공에 대한 막연함 등 고민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즐겁고도 간단한 해결방법들을 제시한다.

책을 펼치면 꿈을 잃은 평범한 샐러리맨과 엉뚱하고 짓궂은 짓만 골라하는 스승 가네샤와의 30여 일간의 티격태격 좌충우돌 불안한 동거와,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매일 매일 주어지는 29가지 가네샤의 과제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이다

< 책의 줄거리 >

단조로운 일상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막연하게 성공을 꿈꾸는 30대의 평범한 샐러리맨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코끼리 형상을 한 신, 가네샤가 나타난다.

인도에서 건너 온 '가네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神)은 지금부터 자신이 내 주는 과제들을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주인공에게 앞으로 과제실천을 약속하기 위한 계약서를 내민다.

달콤한 먹을거리만 밝히면서 엉뚱한 일을 벌이고 짓궂은 행동을 일삼는 가네샤는 '대단한 무언가' 를 제시할 것이라는 주인공의 기대와는 달리, 화장실 청소부터 남을 감동시키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행동들을 매일 매일의 과제로 주인공에게 제시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과제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가네샤를 업신여기고 식비만 축내는 귀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주인공은 가네샤의 과제를 실천하면서 진정한 돈의 의미와, 서비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되고, 성공에 이르기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

2008 법제자료실 구입도서 목록(제2차)

분야	도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년	비고
	총 계	149 권			
정치	지방의회운영사례실무	김치열	한국자료정보사	2008	
행정	지방의회론	이청수	지오넥스	2008	
(25)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이론과 실제	전주상	배재대학교출판부	2007	
	행정과 법	김항규	대영문화사	2008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우치나카 에이스케	이매진	2008	
	여가 그리고 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왕사	2008	
	공공부문의 기록물 관리:사례연구 3	강명숙	진리탐구	2008	
	성공하는 공무원을 위한 45가지 비결	황선만	토파민	2008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국가경쟁력 1위의 비밀	리차드 루이스	살림	2008	
	혁신공무원의 12가지 M.A.P	정도훈	리드리드출판	2008	
	공무원 2.0 시대	최상철	소금나무	2008	
	한국형 싱크탱크의 발전전략	최형두	사회평론	2007	
	창조적 발상과 지역경쟁력	손상락	한울아카데미	2008	
	구조개혁의 진실	다케나카 헤이조	한국경제연구원	2008	
	국가운영 시스템	최병선	나남	2008	
	정부혁신의 전략과 변화관리	차의환	kmac	2007	
	황해 항만산업 테크노폴리스를 열자	김병린	바이북스	2007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김성태	법문사	2007	
	작은 개혁이 성공한다	윤승모	나남	2008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김영래	논형	2008	

	지역축제 경영	서태양	기문사	2008	
	심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오창익	삼인	2008	
	미국이 세계를 망친 100가지 방법	존 터먼	재인	2008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앤서니 기든스	한길사	2008	
	세계를 이끄는 생각	홍일표	중앙books	2008	
경제	미래사회 리더의 경영 키워드	신동기	북오션	2008	
경영	그림 읽는 CEO	이명옥	21세기북스	2008	
(40)	영향력	크리스 와이드너	리더스북	2008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	로저 마틴	지식노마드	2008	
	퍼펙트 피치	존 스틸	이콘	2008	
	커뮤니케이션 불변의 법칙	강미은	원앤원북스	2008	
	세계를 가슴에 품어라	김의식	명진출판	2008	
	슈퍼 기억력의 비밀	에란 카츠	황금가지	2008	
	한국의 슈퍼 개미들	정종태	위즈덤하우스	2008	
	꿈을 이루어주는 코끼리	미즈노 케이야	나무한그루	2008	
	성공	스펜서 존슨	비즈니스북스	2008	
	경제학 콘서트. 1	팀 하포드	웅진지식하우스	2008	
	통찰의 기술	신병철	지형	2008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니시아마 아키히코	예문	2008	
	행복한 사람	토드 홉킨스	쌤앤파커스	2008	
	100가지 미래상품	테오도르 한슈	콜로세움	2008	
	프로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무제표 분석	이병권	새로운제안	2008	
	아니다 혁명	후지타 다카시	리더&리더	2008	
	좋은 인생 좋은 습관	월슨 프로랜스	휘닉스	2008	
	77번 고마워	기타가와 야스시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3분 시크릿:생각편	편기욱	흐름출판	2008	
	3분 시크릿:실천편	편기욱	흐름출판	2008	
	굿바이 허둥지둥	켄 블랜차드	21세기북스	2008	
	집중	리사 헤인버그	마젤란	2008	
	인맥관리의 기술	김기남	서돌	2008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최준철	이콘	2005	
	가슴 뛰는 기업을 찾아서	이채원	이콘	2007	
	행복한 달인	이지성	다산라이프	2008	
	부하직원들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박태현	웅진윙스	2008	
	칭찬과 구중의 힘	상진아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아이의 모든 인생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래리 C. 해리스	다산에듀	2008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조 바이텔	눈과마음	2008	
	공부도둑	장회익	생각의나무	2008	
	절대긍정	김성환	지식노마드	2008	
	김밥 파는 CEO	김승호	엘도라도	2008	
	친구	스탠 톨러	위즈덤하우스	2007	
	리치웨이	스티브 찬들러	프롬북스	2008	
	경영정보시스템	Laudon Kenneth C.	시그마프레스	2008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	오마타 간타	다산북스	2008	
	계속모드	오오하시 에츠오	다산라이프	2008	
역사	만들어진 역사	조셉 커민스	말글빛냄	2008	
인물	이중텐 중국인을 말하다	이중텐	은행나무	2008	
(28)	이중텐 제국을 말하다	이중텐	에버리치홀딩스	2008	
	한국사 전. 1-2	KBS한국사전제작팀	한겨레출판사	2008	
	정말 궁금한 우리 예절 53가지	이창일	예담	2008	

	집에도 생명이 있다	이한중	넥서스BOOKS	2008	
	관상과 수상	이남희	다밋	2007	
	이순신 파워인맥	제장명	행복한나무	2008	
	티베트 이야기	토머스 레어드	웅진지식하우스	2008	
	빌 브라이슨 발칙한 유럽 산책	빌 브라이슨	21세기북스	2008	
	조선의 마지막 문장	이건창	글항아리	2008	
	조선의 킹메이커	박기현	역사의아침	2008	
	삼국지 강의. 2	이중텐	김영사	2007	
	선비의 육아일기를 읽다	김찬웅	글항아리	2008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버지	오승훈	파라북스	2008	
	페리 이야기	퍼트리샤 우드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사막에 숲이 있다	이미애	서해문집	2006	
	지리산에 사는 즐거움	이창수	터치아트	2008	
	크리스탈 해골의 신비	크리스 모턴	크림슨	2008	
	잡인열전	이수광	바우하우스	2008	
	제국의 미래	에이미 추아	비아북	2008	
	미궁에 빠진 조선	유승희	글항아리	2008	
	조선비화	배상열	청아출판사	2008	
	열하일기. 상.하	박지원	그린비	2008	
	꿈너머 꿈을 꾸다:정도전의 조선창업 프로젝트	박남일	서해문집	2008	
	대한민국 베스트 여행지	백남천	나무생각	2008	
문학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오픈하우스	2008	
교양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열림원	2007	
(56)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김혜남	갤리온	2008	
	젊음의 탄생	이어령	생각의나무	2008	

렘브란트의 유령	폴 크리스토퍼	중앙books	2008	
하악하악 : 이외수의 생존법	이외수	해냄출판사	2008	
스타일	백영옥	예담	2008	
그래도 계속 가라	조셉 M. 마셜	조화로운삶	2008	
완득이	김려령	창비	2008	
산중일기	최인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새벽 세 시, 바람이 부나요	다니엘 글리타우어	문학동네	2008	
책도둑 1-2	마커스 주삭	문학동네	2008	
나는 마흔에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신달자	민음사	2008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	게리 스탠리	위즈덤하우스	2008	
오디오의 유산	김영섭	한길사	2008	
나를 꽃피우며 살아가	김연수	청어	2008	
나를 깨우는 명상	김연수	청어	2007	
견디지 않아도 괜찮아	박원순	샘터	2008	
네 가족을 믿지 말라	리저 러츠	김영사	2008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이 든다는 것	사이토 시게타	리수	2008	
신의 그릇 1-2	신한균	아우라	2008	
하늘다리	우영창	문학의문학	2008	
식객 19 : 국수 완전정복	허영만	김영사	2008	
식객 20 : 국민주 탄생	허영만	김영사	2008	
쿨하게 한걸음	서유미	창비	2008	
외규장각 도서관의 비밀 1-2	조완선	휴먼앤북스	2008	
남편이라는 것	와타나베 준이치	열음사	2008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2008	
누구나 일주일 안에 피아노를 죽이게 치는 방법	전지한	에듀박스	2008	

내 몸을 지키는 건강비법 100가지	이시하라 유미	삼호미디어	2008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	아마무라 신이치로	쌤앤파커스	2008	
5분 눈운동의 기적	김동섭	한언	2007	
자연 그대로 먹어라	장영란	조화로운삶	2008	
스키니 비치	로리 프리드먼	밀리언하우스	2008	
밥상 혁명	이태근	더난출판사	2008	
내 몸을 살리는 면역의 힘	아보 도오루	부광	2007	
핵산 암을 이기다	미야나가 요시아키	관음출판사	2003	
정력식품 & 건강법	권용욱	휴먼앤북스	2005	
아유르베다 : 신비의 건강법	바산트 레드	관음출판사	2003	
껍질을 알면 건강을 얻는다	김해용	두리원	2003	
심주섭 할아버지의 뜨겁지 않은 속뜸 치료법	김용태	서울문화사	2004	
의사가 필요없는 먹거리 건강사전	이시하라 유미	행담	2006	
바다음식을 먹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최진호	교문사	1999	
마늘 제대로 알고 먹자	류병호	삼호미디어	2008	
기적의 건강법	서효석	다산라이프	2008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70가지 방법	호시노 타이조	태웅출판사	2005	
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	안국준	태웅출판사	2006	
(대역)만병회춘	진주표 편역	법인문화사	2007	
기적의 108배 건강법	조현주	사람과책	2008	
사람을 살리는 단식	장두석	정신세계사	2003	
몸과 마음의 대자유	무명	선세계	2006	
게으른 건강법	박대현	상상하우스	2008	
한국약용버섯도감	이호득	교학사	1999	

(충청남도전자도서관 : <http://library.chungnam.go.kr>)